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4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김상훈 · 이현승 · 고동진
김형동 · 박충권 · 윤한홍
진종오 · 최보운 · 강대식
이달희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의 설치·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터 플랫폼(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3(의심계좌정보의 공유) ①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되거나 피해의 심거래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의심계좌정보”라 한다)를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계좌번호 등 계좌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2.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 금융거래정보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심계좌정보의 범위, 제공·활용 절차 및 보관·파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의 설치·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터 플랫폼(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5조의3(의심계좌정보의 공유)</u> <u>①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u>

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되거나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의심계좌정보”라 한다)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계좌번호 등 계좌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2.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 금융거래정보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심계좌정보의 범위, 제공·활용 절차 및 보관·파기에

<u>제15조의2(벌칙)</u> (생략)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15조의2</u>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5조의4(벌칙)</u>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7조(양벌규정) ----- ----- ----- ----- --<u>제15조의4</u>----- ----- ----- ----- ----- ----- ----- ----- ----- -----.
---	--